

【별 표】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제2조 관련)

| 구 분 | 단 위 | 사용료 등 | 정수기준 |
|---|-------|---------|--------------------------|
| 기술교육 수 강 료 | 1인 1월 | 10,000원 |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
| 생활문화 수 강 료 | 1인 1월 | 10,000원 | · 1일 2시간 이내 · 주 1일 기준 |
| 보 육 료 | 1인 1월 | 7,500원 |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
| 수 영 수 강 료 | 1인 1월 | 40,000원 | · 월 20시간 이내 |
| ※ 수강료 및 보육료는 강의 · 보육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정수할 수 있음.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하여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해 오던 문화관광국 소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서울시의 위원회 통폐합정비계획에 의하여 주택국 소관 건축조례를 개정('99. 7. 31)하여 건축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로 통폐합되었으나, 관련조항의 위원회 명칭이 정비되지 않았던 부분을 정비하고, 동 분과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건축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 · 운영중인 많은 위원회 중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를 시정개혁차원에서 폐지 · 통합하여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과 통합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러나, 종전의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건축조례에 의해 건축위원회의 한 분과위원회

로 통폐합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이 종전과 다름이 없어 이는 위원회 통폐합이 형식적인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통합으로써 실질적인 통합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입법체계상의 혼란, 소관업무 부서간 갈등과 업무 비能把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건축위원회의 하부 위원회로 완전히 통합하여 주택국에서 관장하도록 하거나, 종전과 같이 건축위원회와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를 문화관광국에서 관장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하더라도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함.

○ 현행 조례상 의회가 미술작품 심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5명을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23조와 같이 이를 삭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현행처럼 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거나 소관 위원회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위원회 통폐합의 타당성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조례 정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세안경위

○ 본 개정조례안은 '99. 12. 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 12. 2.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사유

○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업무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속적인 청소년 문화정책을 위해 마련한 서울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